발간등록번호
11-B554214-000002-1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지원기관, 자원연계 안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CONTENTS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 활용안내 4

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8

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1. 여성긴급전화1366 16

2. 상담소 22

2-1. 가정폭력 상담소 24

2-2. 성폭력 피해 상담소 30

2-3. 성매매 피해 상담소 36

3.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43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0

4-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5

4-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8

4-3.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61

5. 자활지원센터(성매매피해자) 72

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77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91

Ⅲ.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타 관련 제도 및 정보 100

Ⅳ.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락처 130

부록

부록 1. 자원연계 154
부록 2. 여성폭력 법률 18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 활용안내

Q.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는 어떻게 제작되었나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정부 정책 자료와 발간자료 등을 참고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정부 부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감수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참고자료

-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2020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
-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보건복지부)
-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법무부)

Q.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목차	주요 내용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로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소,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주요 기능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개관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 상담소(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보호시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성매매피해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타 관련 제도 및 정보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 여성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제도 등 **피해자를 위한 기타 관련 제도 및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락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락처를 한 곳에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연락처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주요 내용
부록 1. 자원연계	여성폭력 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연계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부록 2. 여성폭력 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의 개념 ▪ 여성폭력 유형(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에 따라 각 개별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적 개념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에 수록된 정보 및 피해자 지원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례를 삽입**하였습니다.

Q.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여성폭력 피해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을 알고 싶을 때
- 여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연계 정보**를 알고 싶을 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연락처를 알고 싶을 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 활용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에 담긴 피해자 지원 정보 및 기관 연락처는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내용 및 기관 연락처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에 수록된 문의처를 통해 사전확인 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를 다운로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이 장의 구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 여성긴급전화1366
- 상담소(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성매매피해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종합도식도'를 제시하였습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주요 기능 p.10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종합도식도 p.1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주요 기능

피해자 지원기관	주요 기능
여성긴급전화 1366	- 위기개입 상담(초기 긴급상담) - 긴급피난처 운영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관련 기관 연계
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소·성폭력 피해 상담소·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있으며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상담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지원 - 법률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연계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 해바라기센터는 3가지 유형(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담지원 - 의료지원 - 수사·법률지원 - 심리치료 지원 - 동행서비스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있으며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숙식(주거지원) 등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 보호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지원 - 법률지원 -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등

피해자 지원기관	주요 기능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	■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 일자리 제공사업 운영: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직업훈련 및 진학·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 -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 지원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보호시설, 그룹홈,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초기상담 -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그림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종합도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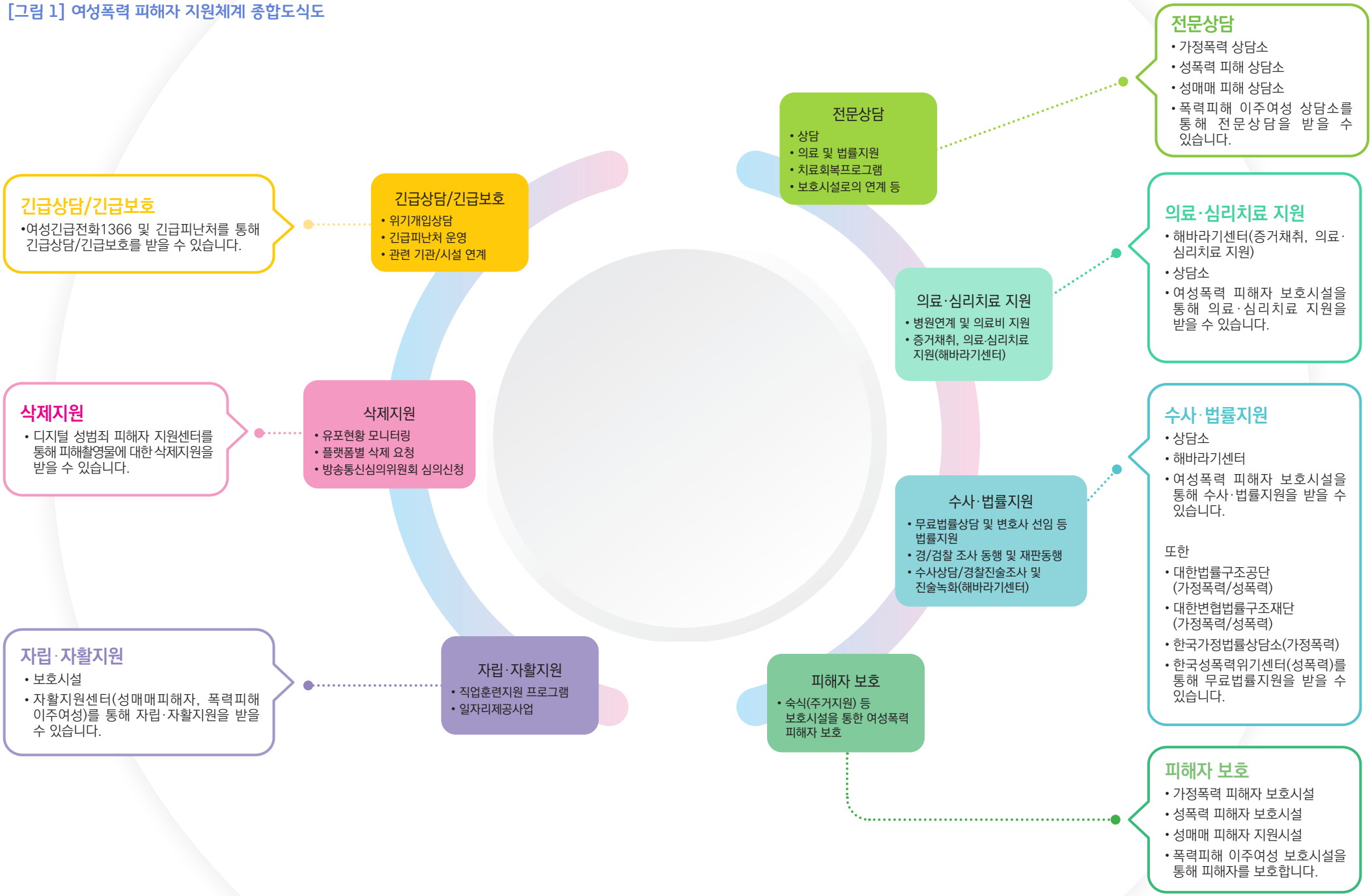

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이 장의 구성

이 장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과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1. 여성긴급전화1366 p. 16
2. 상담소 p. 22
2-1. 가정폭력 상담소 p. 24
2-2. 성폭력 피해 상담소 p. 30
2-3. 성매매 피해 상담소 p. 36
3.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p. 43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p. 50
4-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p. 55
4-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p. 58
4-3.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p. 61
5. 자활지원센터(성매매피해자) p. 72
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p. 77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p. 91

1. 여성긴급전화1366

주요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은 언제라도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365일 24시간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은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상담(초기지원) 이외에도

- **긴급피난처 운영**
- **현장상담 서비스**
- **관련 기관·시설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1366'편에 수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의 주요 업무 ····· 17
- 긴급피난처 ····· 19

● 여성긴급전화1366의 주요 업무

■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상담(초기지원)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 긴급구조 진행

■ 긴급피난처 운영

- 피해여성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피난처로 임시 보호 후 전문시설로 연계
-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자녀 최대 7일 임시보호 및 숙식제공

※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여성 등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하여 보호 가능

■ 현장상담 서비스 진행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여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긴급피난처 피신 및 관련 기관 연계 등을 위해 현장 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서비스 지원

■ 관련 기관·시설의 연계

수사기관,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행정기관 등 연계

※ 전문상담소(상담원)에 연계가 곤란한 야간·휴일 등 특정 시간에는 1차 긴급상담 후 다음 날 오전 전문상담소로 연계조치

1년 365일 + 1일 = 1366

1366의 의미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 2] 여성긴급전화1366 연계 체계

여성긴급전화1366은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합니다.

● 긴급피난처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후 긴급한 숙식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에 대해 **긴급피난처**에서 **임시 보호**를 합니다. **이후에는 전문시설로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이용대상**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자**

■ **지원내용**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해 **365일 24시간 임시보호(최대 7일)***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

* 단,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타 보호시설로의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 보호 가능

■ **이용안내**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후 입소

[그림 3]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한 긴급피난처 입소 및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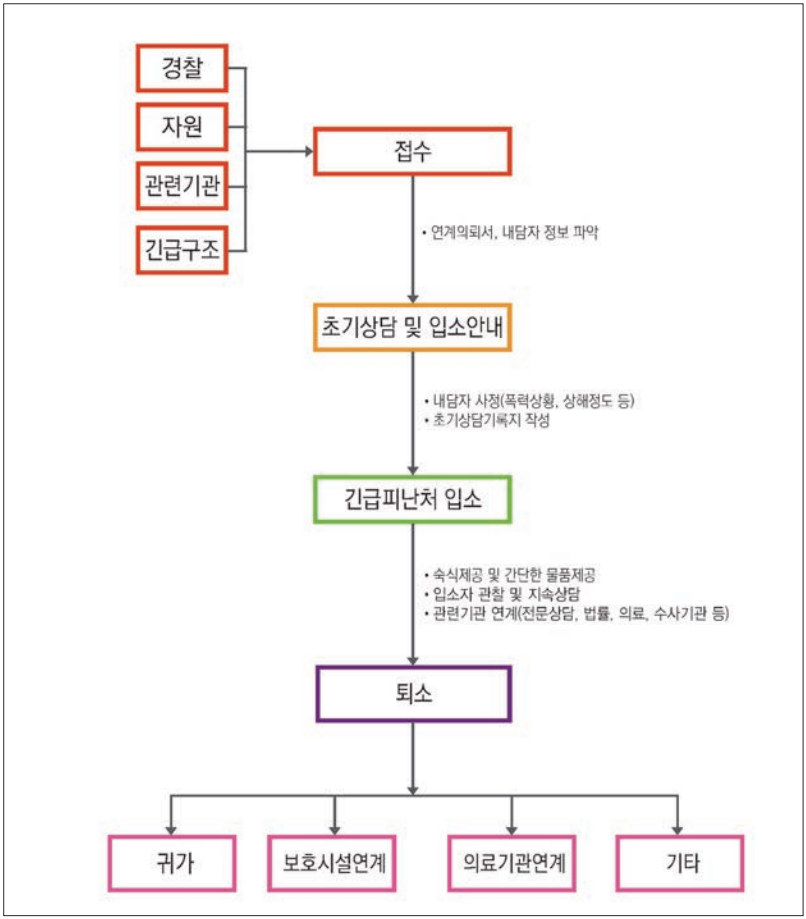

출처.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지원 매뉴얼 2: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상담과 보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후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는 **긴급피난처** 입소를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 보호 이후에는 전문시설(상담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로의 연계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및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한 피해자지원 사례

“그녀는 오랜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을 견뎌왔다.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그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자행해왔고, 둘째 아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둘째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저항할 힘도 없었다. 결혼 초부터 목을 조르고, 발로 밟고, 의자로 짓누르는 등 가학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자리를 비워도 이성과의 만남을 의심할 정도로 의처증이 심각했다. 여느 때처럼 남편의 폭력이 가해졌고,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녀가 입원하는 와중에도 병원까지 찾아와 폭언과 폭력으로 협박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렸다. 그녀는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112에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과 1366센터의 현장상담원이 긴급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남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즉각 분리시켰다. 이후 현장상담원이 피해자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폭력에 의한 통증으로 앉지 못하고 누운 상태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둘째 자녀에게 수시로 악담을 퍼붓고 때렸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오랜 폭력에 의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집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며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를 호소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최대 7일간 머물 수 있는 1366센터의 긴급피난처 입소를 도왔습니다.....

1366센터는 피해자가 긴급피난처에 머무는 동안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심신의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도왔습니다.

1366센터에서 보호시설로 연계할 때, 피해자가 자녀들과 꾸준하게 연락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전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지원시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남편에 의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보호시설과 협업하여 재등록을 도왔습니다. 동시에 장애가 있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폭력에 대한 징후는 없었으나 대화가 원활하지 않고 보행이 불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의 장애인 시설입소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주민자치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입소 가능한 시설과 절차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당분간은 둘째 자녀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첫째 자녀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의 시설 입소 상황을 안내하고 상의하여, 남편과 분리되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긴급피난처 퇴소 이후에도 지속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기관을 안내하였고, 가정법원 상담위원으로 위촉된 본 1366센터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 관련 상담 및 무료법률 상담기관을 안내하였습니다.”

출처. 「2017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집: 꿈을 그리다」 중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2. 상담소

주요 내용

여성폭력 피해지원을 하는 상담소로

- **가정폭력 상담소**
-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는 **전문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의료지원, 법률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업무를 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편에 수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의 주요 업무 ····· 24
치료·회복 프로그램 ····· 25
의료지원 ····· 27
법률지원 ····· 28

2-2.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주요 업무 ····· 30
치료·회복 프로그램 ····· 30
의료지원 ····· 32
법률지원 ····· 34

2-3.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주요 업무 ····· 36
치료·회복 프로그램 ····· 37
의료지원 ····· 38
법률지원 ····· 39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40

[그림 4] 상담소의 주요 기능

2-1.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소의 주요 업무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 홍보** 및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지원
  -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지원
  - 가정폭력으로 취업, 직업훈련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취업 등 자립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Ⅲ.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타 관련 제도 및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133쪽)

●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 내 용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운 영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시

종류	내용 및 목표
개별 심리상담	- 폭력상황 및 개인별 문제 파악 -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 위기 개입 등 전문가 진단 및 정신과 치료 등 필요시 적용
집단상담	- 구타경험과 현실의 탐색 - 폭력순환 고찰 - 맞지 않을 권리(인지적 접근) - 죽음, 고립, 무의미감 등 치료 -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심신회복 캠프 (1박 2일 기준)	- 문화체험·여행을 통해 자연과 접하여 정서함양과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며, 집단 속에서 관계성 훈련, 친목도모와 유대감 강화
동반자녀 심리치료	- 미술치료 - 놀이치료 - 아동치료프로그램 등
아동 집단상담	- 폭력가정 아동의 외상문제 - 분노, 우울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 - 분노조절 - 자존감 향상 - 위기대처능력 향상 등
기타	- 음악치료, 미술치료, 춤치료, 독서, 원예, 수예 등 정서치료 - 사이코소시오드라마 등의 특별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참여 사례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둘이 살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며 몹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의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 아이들만큼은 어떻게든 아버지가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참고,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해도 남편의 가정폭력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화가 나면 카드부터 정지시키고,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것까지도 참을 수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욕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맞아서 잠시 기절을 했는데 아이들이 쇼크를 받아 울고불고하니까 옆집에서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상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하소연할 곳이 필요했을 뿐 상담소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상담선생님의 권유로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구성원들 서로 간에 위로와 지지를 받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더 이상 나를 탓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항상 “너 때문에, 너가 잘못해서” 라고 제 탓을 해서 저 역시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느끼며 체념하고 있었던 거지요. 또 분노조절, 의사소통, 자녀양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제가 회피해왔던 문제를 직면하고, 폭력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조금 생기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져서 진즉에 가정폭력 상담소에 왔었더라면 ~~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폭력 상담소에 와서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해서 저처럼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201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집: 희망이 피어 오르다」 중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6)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 의료지원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 지원 가능

■ 의료지원 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보건에 관한 상담
- 가정폭력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 법률지원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 폭력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률구조활동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

■ 무료법률지원 보조사업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법률지원 내용

- 형사소송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피해자의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
- 민사·가사 소송대리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 법률상담

☎ 문의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133쪽)
- 무료법률지원 보조사업자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http://www.lawhome.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s://www.klac.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http://www.legalaid.or.kr/

무료법률지원 보조사업자(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한 피해자 지원사례

“피해자는 20xx년 혼인하였다. 피해자의 전 국적은 베트남으로, 혼인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아 피해자는 혼인 초부터 폐지를 줍거나 계단 청소를 하여 생활비를 벌었고, 자녀를 출산한 후 회사에 취직하였다. 남편은 혼인 초부터 피해자를 의심하여 폭언과 폭력을 자주 행사하였고, 여행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다치자 병원에는 장롱에 부딪혔다고 말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또 목을 심하게 졸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다. 이후 남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피해자는 남편을 경찰에 고소하고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연계되었고, 상담 결과 이혼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원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속변호사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소송기간 중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청구를 하여 월 30만원의 지급이 인정되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은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다쳐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었다.

본 사건은 남편인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8,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상대방은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한편 이혼 확정 후 상대방은 양육비를 한 번만 지급하고 계속 지급하고 있지 않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송구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피해자A 지원사례(한국가정법률상담소)

2-2.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주요 업무

-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연계**
-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의료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전국 성폭력 피해 상담소 (141쪽)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 **내 용**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운 영**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종류	목표 및 내용
개별 심리상담	(목표) 피해자 개개인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피해 상황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실시하며 심리적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 (내용)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 치유 결정 -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 기억 재생 - 사실로 인정하기 - 침묵 깨기 -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 내부의 어린아이와 접촉 - 슬픔작업 - 분노작업 - 폭로 후 대면하기 - 용서하기 - 내면세계의 힘과 만나기 등의 단계로 진행 (기타) 전문가 심리평가 및 정신과 치료
여성주의 집단상담 -자조 (self-help)와 역량강화 (empowerment)	(목표) 성폭력 피해 경험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성역할 분석, 힘의 분석, 주장훈련, 의식향상훈련, 인간관계기법, 독서요법, 재구성, 재명명 등을 통해 역량강화 (내용) 심리교육 및 행동 훈련 등을 이용하여 자기이해와 관계형성을 도움
심신회복 캠프	문화체험, 여행을 통해 자연과 접하여 정서 함양과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며, 집단 속에서 관계성 훈련, 친목도모와 유대감을 강화
기타	(목표) 성폭력 피해를 직접 다루지 않는 일반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인식하고 확산시키고 이끌어 내도록 긍정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한계성을 가진 개인의 행동이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진로교육,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춤/동작치료, 자기방어훈련,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훈련, 장점 강화 프로그램, 감수성 훈련, 글쓰기 작업 등)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 의료지원 목적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지원

※ 피해자 가족의 의료지원은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증상의 강도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 의료지원 내용

-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상담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지원(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한의원 등 포함)
- 성매개 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피부과, 비뇨기과 등) 지원
-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신체 사정) 및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인공임신중절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간병비 지원

■ 목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간병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지원
■ 지원내용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 예시: 피해자가 1인 가구, 세대구성원 중 성인인 구성원이 본인 밖에 없는 경우,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 지원기간	최대 1개월 ※ 당해 지자체(시·군·구)가 심의를 통해 피해 정도, 가정환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 법률지원 목적

-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 폭력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률구조활동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

■ 무료법률지원 보조사업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법률지원 내용

- 형사소송 지원
  -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피해자의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판절차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및 참여, 증거물 열람·등사 등이 가능하며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 민사·가사 소송대리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 법률상담

문의

- 전국 성폭력 피해 상담소 (141쪽)
- 무료법률지원 보조사업자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s://www.klac.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http://www.legalaid.or.kr/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http://crisis-center.or.kr/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법률지원 Q&A

Q.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성폭력이 수반된다면,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거나 가정구성원*사이에서 발생하여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구성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관계, 적모와 서자 관계, 동거 친족

2-3. 성매매 피해 상담소

●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주요 업무

- **상담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구조**
  - 전화, 내방, 현장방문, 온라인 상담을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구조하고 지원
- **현장방문 상담**
  -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한 긴급지원 및 탈성매매 유도
  - 홍보지를 통해 성매매피해 관련 도움 요청기관, 법률지식 등의 정보제공
  - 면담 및 의약품·생필품 등 물품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과 관계형성
  - 성매매 업소 및 여성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 전화, 인터넷, 편지 등을 통한 상담 또는 현장방문상담 실시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성매매여성들의 성매매알선 피해,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조사동행, 소송지원, 변호사 선임 등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 문의: 전국 성매매 피해 상담소 (147쪽)

●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 내용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운영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시

종류	내용
상담치료	개별심리상담, 단체심리상담, 약물·알콜 상담, 의사소통훈련, 의식개혁 프로그램, 가족상담
강의(학습)	경제교실, 법률강좌, 건강강좌
동기부여	비전제시, 자기경영, 직업탐색, 진로교육
정서치료	캠프(극기훈련, 지역탐방 등), 음악치료, 미술치료, 웃음치료, 독서치료, 명상(요가), 문화체험, 다도체험, 원예치료, 자원봉사, 연극치료, 글쓰기치료, 춤치료, 사물놀이 등

●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 의료지원 목적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료지원을 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자

■ 의료지원 내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기분장애 등)의 치료비용
-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된 비용
- 성병 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 알코올 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 그 밖에 성매매 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 법률지원 목적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자

■ 법률지원 내용

- 성매매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제비용(조사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등 간접비용)
- 성매매 관련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그 가족들에게 관련 법률절차,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상담 실시 및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문의: 전국 성매매 피해 상담소 (147쪽)

● 성매매 피해 상담소 등을 통한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사업 목적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성매매 집결지 정비 기반 마련

-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 지원
- 성매매 여성에게 탈업소 및 탈성매매 계기 제공

■ 지원대상

집결지 성매매 여성

■ 사업 내용

1. 심신치료 및 정서회복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상담 초기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성매매로 인해 얻게 된 제반 질병 치료지원

2. 탈업소 장애요인 제거
- 업주와의 선불금을 포함한 빚 문제 등 제반 민·형사상 해결과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 자문 및 소송관련 비용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및 파산절차 등 지원

3. 자활기반 마련 지원
- 개인별 수준에 따른 직업탐색프로그램 제공/직업훈련(진학 포함) 등을 통한 취업준비 과정 지원

4. 탈업소 및 탈성매매 유도

5. 상담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20.4.30. 국회 통과, 시행 2020.11.20.)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됩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이용대상, 사업의 목적,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대상**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 **사업 목적**
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구조지원을 통한 인권 보호
2. 의료·법률 등 지원을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 복귀
3.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 도모
4. 지역사회의 성매매 불법성 인식 공유를 통한 대응 강화

■ **사업 내용**
1.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온라인 상담, 거리상담 등
2. 밀착형 사례관리 등을 통한 치료회복 및 심리치유, 의료·법률지원 등
3. 진로탐색, 직업훈련 등 지원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활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KBS 2020.4.30.
'성매매한 아동·청소년, 모두 피해자로 규정해 회복·지원'

"앞으로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은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돼 피해 회복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보호처분 등 선고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성 매수자와 포주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성 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성매매에 관계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호를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의료, 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 보호체계 내에서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받게 됩니다."

3.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주요 내용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근거법령: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편에 수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유형 및 특성** ····· 45
- **해바라기센터 주요 지원내용**
  1. 상담지원 ····· 46
  2. 의료지원 ····· 46
  3. 수사·법률지원 ····· 47
  4. 심리치료 지원 ····· 48
  5. 동행서비스 지원 ····· 49

[그림 5]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

● 해바라기센터 유형 및 특성

해바라기센터는 **3개 유형(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으로 **전국 39개소 (2020년 11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대상	이용시간	지원내용
위기 지원형 (16개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 (모든 연령 및 성별)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아동형 (7개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피해자 가족	월-금 9:00~ 18:00*	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외상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
통합형 (16개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 (모든 연령 및 성별)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후 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지원, 장기 상담과 치료지원

※ 센터 운영시간 외의 시간은 재택 당직 근무제를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 및 치료 지원 연계가 가능

☎ 전국 해바라기센터 (150쪽)

● 해바라기센터 주요 지원내용

1) 상담지원

- 초기면접을 통한 사례접수 및 위기지원
-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계획 수립
-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완화와 회복을 돕고, 피해자가 적절한 대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지속 상담)
- 가족 등 주변환경 체계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주위로부터 적절한 옹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2) 의료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진료
- 응급키트 및 진단장치 등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 증거물 채취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에 의한 피해자 치료 및 진료
- 의무기록(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 지원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인공임신중절 지원

3) 수사·법률지원

- **수사지원**: 센터에 배치된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 성범죄 특성상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를 안정시켜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
  - 진술녹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의무적으로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법원 등을 재차 방문하여 진술내용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과정에 활용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라도 피해자 안정과 조사 횟수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진술녹화 실시
  -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등과 연계,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정보나 자료 제공 등 지원

- **법률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형사·민사 절차상의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 피해자가 고소를 결정하거나 소송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
  - 재판 내용 모니터링, 증인출석 및 동행, 재판과정에 필요한 문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 심리적 지지 등
  -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및 무료법률지원사업 기관(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등을 통한 소송지원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수사지원

"저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기 전에 거의 14년을 수사부서에서 근무했었는데 그곳에서는 피의자 위주의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빨리 송치해서 빨리 처리하자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OO 해바라기센터 수사팀장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고, 공고에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홍보한 내용만 확인하고 무작정 지원해서 오게 되었어요. 막상 와보니 평소 제가 조사하던 시스템하고 너무 다른 NICHD(성폭력피해아동 면담기법)라는 전문조사기법을 사용하고, 경찰서의 분위기와는 너무도 다른 독립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수 있었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의 문제를 상의하고...저는 지난 2년 동안 해바라기센터에서 정말 보람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경찰관들한테 '해바라기센터가 이런 곳이니 고민하지 말고 지원 요청하세요'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출처. 「2019 해바라기센터 소식지 Vol.5 누비다+」 중에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4) 심리치료 지원

- 심리적 후유증 및 피해가능성과 관련한 종합적 심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현재 심리상태 및 적응수준, 정신의학적 진단 및 치료적 제언 등 심리평가 실시
- 피해자 및 가족의 후유증의 감소, 성폭력 피해 후 처리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어려움의 해소,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적응력 향상 도모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등 전문 심리치료자에 의한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해바라기센터는 응급 위기지원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병이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피해를 당하는 것뿐 아니라 우울, 불안, 무기력감, 죄책감으로 인한 자해, 자살 시도, 수면장애, 알코올 중독, 환청·환각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해바라기센터를 찾은 여고생 A는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A는 초·중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바로 알고 성폭력으로 말미암은 부정적 생각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주력했고, 현재는 자기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2016.4.3.일자)

5) 동행서비스 지원

- 보호자의 여건(한부모, 조손, 맞벌이 등)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해바라기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 치료를 위한 동행 이외의 문화(영화, 캠프활동 등), 교육, 수사(센터 진술 녹화) 동행, 기타 귀가 동행 등 지원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주요 내용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돕는 **자립·자활을 지원**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편에 수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시설 주요 지원내용 ····· 51
- 보호시설 현황 ····· 52
- 보호시설 유형 및 주요 지원내용
  - 4-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유형 및 지원내용 ····· 55
  - 4-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유형 및 지원내용 ····· 58
  - 4-3.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유형 및 지원내용 ····· 61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지원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 66

● 보호시설 주요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보호 및 숙식제공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지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보호시설 내 상담이나 외부 자원연계를 통한 상담 ※ 개별상담의 경우, 피해자의 상황 및 개별적 욕구에 따라 맞춤형 실시
의료지원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해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법률지원	- 여성폭력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을 위한 제비용 지원 - 여성폭력 관련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그 가족들에게 관련 법률 절차,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상담 실시 및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자립·자활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 지원

[그림 6]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

● 보호시설 현황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여성폭력 유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시설 현황 및 입소기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2] 보호시설 현황 및 입소기간

폭력 유형	시설	시설 세부 구분	대상자	입소기간	
				원칙	연장
가정 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등	6개월	3개월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등	2년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2년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2년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1년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2년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1회당 2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	만 19세 미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친족성폭력 피해자	19세가 될 때까지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1년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퇴소자	2년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보호시설의 퇴소자	2년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폭력 유형	시설	시설 세부 구분	대상자	입소기간	
				원칙	연장
성매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일반 성인 성매매 피해자	1년	1년 6개월 연장 가능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9세 미만)	19세가 될 때까지	2년 연장 가능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3개월	수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연장 가능
		자립지원 공동 생활시설	탈성매매 한 자로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2년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신변이 가해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다른 보호시설로의 연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피난처에서 30일까지 연장하여 보호**합니다.→ **긴급피난처에 관한 내용은 이 안내서의 1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을 통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절차

출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매뉴얼」(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4-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 유형 및 입소기간

시설	시설 세부 구분	대상자	입소기간	
			원칙	연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등	6개월	3개월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등	2년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2년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2년	

2) 주요 지원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에 관한 내용은 아래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료·회복프로그램 ····· 25쪽
- 의료지원 ····· 27쪽
- 법률지원 ····· 28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지원 사례 1

“그녀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아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우리에게 연계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되어있던 탓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심각한 피부 알레르기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심신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오래 노출되었던 그녀의 불안함을 달래고 낮아진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은 그녀를 위로하고 스스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그녀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알코올중독으로 힘들어하던 그녀를 위해 알코올중독가정 자조모임을 연계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북돋아 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를 위해 교육지원을 하였습니다.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고자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아이가 원하는 과목의 학습을 돕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통해 미술 입시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그녀의 이혼을 위해 법률지원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합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재판이혼으로 진행했고, 결국 법원은 이혼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퇴소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주거지원, 직업훈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녀와 아이에게는 취업과 주거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열정과 인내심이 강했던 그녀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그녀는 결국, 컴퓨터 관련 자격증,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선정 통보를 받고 아이들과 함께 살 집에 들어갈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월드비전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출처. 「2018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집: 함께 잡은 손, 꿈을 만들다」 중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지원 사례 2

"쉼터의 문을 연 순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치듯 집을 탈출하긴 했는데, 막상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때 언젠가 동네 주민이 알려줬던 '여성긴급전화1366'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전화를 걸었죠. 그곳에서 오랜 상담을 통해 저를 쉼터라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쉼터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뭔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야 살았다.' 싶은 거예요. 결혼 13년간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 없었는데 아이와 제가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집을 나오고 나서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 속 불안감은 남아있었어요. 남편과 완전히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부부였고 언제든 남편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죠. 그때 쉼터를 통해 법률지원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쉼터 선생님이 두려움에 떠는 저를 위해 동행해주었고 무료 변호사 지원을 통해 이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불안감이 없어졌다면 거짓말이지만 일단 이혼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남편과의 삶이 아닌 저만의 새로운 삶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쉼터에 잠시 머물면서 남편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이 커졌어요. 딸아이를 혼자서 키워나가야 하는데 당시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망가진 상태였죠. 하지만 아이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진 못하더라도 빚을 안겨줄 수는 없잖아요.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 쉼터에서 체험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길을 제시해줬어요.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엄마들의 모임을 통해 서로 위로를 받기도 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주거지원사업과 자활을 통해 삶을 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 아침저녁으로 일을 하며 몸은 고됐지만 덕분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고 잘 키워낼 수 있었죠."

출처. 「201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집: 희망이 피어 오르다」 중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6)

4-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 유형 및 입소기간

시설	시설 세부 구분	대상자	입소기간	
			원칙	연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1년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2년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1회당 2년 이내)
	특별지원보호시설	만 19세 미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친족성폭력 피해자	19세가 될 때까지	2년 범위 에서 1회 연장 가능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1년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퇴소자	2년	2년 범위 에서 1회 연장 가능
	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보호시설의 퇴소자	2년	2년 범위 에서 1회 연장 가능

2) 주요 지원내용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지원 요청
-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지역 사회 자원과 연계), 직업 훈련비 지원
  - 보호시설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지원(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 등)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전학,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에 관한 내용은 아래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료·회복프로그램 ····· 30~31쪽
- 의료지원 ····· 32쪽
- 법률지원 ····· 34~35쪽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지원 사례

“그녀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우리에게 연계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되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일상적인 일에 많은 피로감과 정서적으로 과민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비가해 부모에 대한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지원을 통해 심리치료와 약물복용을 병행하였습니다. 연계기관을 이용하여 진술녹화와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라 심신이 많이 지쳐 있어 입소 초기에는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지 않도록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법률동행지원도 진행하였습니다. 몇 차례 열리는 재판에 담당 상담원이 모니터링을 위해 참여하였고,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 기일이 잡히고 가해자의 무죄 주장과 비가해부모의 탄원서 요청 및 회유 편지 등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영위하던 일상생활마저 힘들어하여 외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재판종료 이후 그녀가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과 상실감에서 점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집단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3년 동안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고자 부진한 과목(영어)에 대한 학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은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 힘들어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그녀의 적성을 발굴하고 일상생활에 흥미를 주기 위해 주말에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수강해 자격증 취득으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손재주가 많아 자신이 만든 커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과정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뷰티아카데미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고가의 뷰티도구를 무료로 지원받았습니다. 뷰티아카데미에서 재능이 있다는 칭찬도 받고 작은 대회에 참여하여 장려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퇴소자립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 인근에 알맞은 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비는 장학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락 중인 비가해부모 및 형제자매와 불화가 심해지면서 불편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 퇴소 후에도 주기적으로 퇴소 후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학업을 지속하려고 노력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서 주거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출처. 피해자 A 지원사례(B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3.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1) 유형 및 입소기간

시설	시설 세부 구분	대상자	입소기간	
			원칙	연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일반 성인 성매매 피해자	1년	1년 6개월 연장 가능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19세 미만)	19세가 될 때까지	2년 연장 가능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3개월	수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연장 가능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그룹홈)	탈성매매 한 자로서 자활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2년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장애인 입소자의 입소기간 연장: 입소자가 장애인인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가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 1회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지원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입소자 피해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2) 주요 지원내용

① 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

구분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지원내용	1.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등	1. 일반지원시설 지원내용 (1-8)과 동일 2. 진학을 위한 교육 제공 혹은 교육기관에 취학 연계

②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무료숙식 제공 등 안전하게 보호
- 성매매업소로부터의 구조, 출국 및 국내체류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 성매매 관련 여성질환 등 응급치료 지원
-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조, 법원 동행 등 법률지원
- 출입국관리소, 자국대사관, 경찰서 등 외국인 여성의 피해구제 및 법률지원과 관련된 기관 연계
-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피해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센터 일자리 제공(공동작업장 운영,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 지원
- 귀국 및 국내체류 지원
- 피해 여성들의 자활을 도모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인권, 언어, 컴퓨터 등의 교육 실시 등

③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숙박 지원
-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지원
- 자립·자활을 위한 활동 지원
- 사회보장급부(생계·의료급여) 수령지원 등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한 피해자지원 사례

"성심(가명)씨가 처음 성매매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친구를 통해서였다. 2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던 성심씨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체중이 80kg까지 불어나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산후우울증이 심해졌다. 또 전 남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성심씨 이름으로 끌어다 쓴 빚이 늘면서 이혼을 하게 됐다. 빚의 일부를 성심씨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었지만 투잡을 뛰어도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 *(빚을) 어떻게 정리를 해보자 싶어서 일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생활을 해야,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사치가 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찰나에 친구가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깐 눈 딱 감고 해봐라. 그랬죠.*

성심씨는 그렇게 친구에 의해 생전 생각도 못 했던 성매매에 유입되어 여러 힘든 일들을 겪어야 했다. 업주나 알선업자들이 성산업 시장에서의 끊이지 않는 수요에 맞춰 성매매 여성들을 조달하기 위해 친구를 끌어오게 하는 것은 흔한 수법이었다. 그리고 유인된 여성들에게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서 신뢰를 얻어 그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성심씨가 만났던 업주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업주를 믿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은 모두 업주가 자기 개인을 위해 써버리고 성심씨에게 남은 것은 6,500만원의 빚뿐이었다. 성심씨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쉼터에 입소했다. 성심씨는 쉼터에서 2년 6개월의 기간을 지냈다. 입소 전에는 1주일만 임시로 지내고 나갈 요량으로 입소했지만, 상담원들이 힘들었던 시기의 성심씨를 잡아주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지금처럼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곳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큰 행운이자 자랑이라고 성심씨는 말한다.

> *그 때 당시는 한없이 어렸죠.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맨날 맨날 울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잡아줬어요. 여기 와서 치료도 받고, 힐링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선생님들이랑도 자주 연락도 할 거지만. 그게요. 나한테는 되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큰 자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온 걸 후회는 안 해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입소 기간을 다 채우고 쉼터에서 퇴소한 성심씨는 원래는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그곳에서 커피 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가내 수공업을 하시는 부모님 댁에 들어가 일을 도우며 지내게 되었다."

출처. 「여성과인권」 통권 제18호 중에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 **이용대상**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등

■ **목적**

1. 기존의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소외된 성매매 피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제도권 교육과 연계하여 학업 지속 지원 또는 자립·자활 역량 강화
2.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여 학업 및 사회 복귀 지원

■ **주요 내용**

1. 위탁교육 형식으로 의무교육 제공 및 다양한 학습 기회 지원
2. 심신의 건강회복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능 강화교육 지원
3. 대안교육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통합적 자활교육지원
4. 일반교과과목 및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심신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예시

- **책읽기:** 국내 및 세계문학 작품을 읽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나의 일상에 대해 생각하는 수업. '사람' 그리고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더 나아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한 나만의 글쓰기 작업
- **공동체 합창:** 음정, 박자, 리듬, 음악의 기본을 익히고 화음을 통해 하모니와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
- **여성학:** 여성학 수업을 통해 사회 속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온전히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
- **무빙바디:** 몸을 통해 의식적으로 호흡하기, 감각하기, 움직이기, 표현하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프로그램. 나와 타인을 탐색하는 관계작업을 통해 내가 나의 경험에 민감하게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
- **댄스:** 힙합, 웨이브, 바운스 등 기본기를 다지고 함께 안무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 **쏘녀밴드:** 각자의 기량보다는 모두의 협동이 강조되는 밴드음악 프로그램

출처. 관악늘푸른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greenschool1318.com/)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심신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예시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벽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대안교육 위탁기관)와 인턴십(일자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협력 경험을 통해 위기청소녀 자립 복합 공간을 건립했다. 또 관악·강북 자립학교의 공간이 확장되고 위기청소녀들의 일자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악늘푸른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중심의 자립학교 사업과 더불어 일자리 프로그램, 인턴 활동, 취업 연계 등 특화된 자립지원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다. 그 밖에도 매년 직업 체험축제 '쇼미더잡스(Show me the jobs)'를 열어 십대여성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직업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이력서 작성법, 모의 채용 면접 등 실제 취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2017 자치단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사례집: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있다)」 중에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자활을 지원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자활 지원으로 ▲ **직업훈련비 및 진학교육비 지원,** ▲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 **주거지원** 등으로 그 내용을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1) 직업훈련비 및 진학교육비 지원

■ 대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 내용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외부 훈련기관을 포함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비 및 진학교육비 지원**

2)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등을 지원**

- 대상자: 보호시설 퇴소자
- 지급액: 5,000,000원
- 지급횟수: 1회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퇴소 자립지원금**: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단, 입소 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2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자립지원금 지원을 위해서는 **자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시군구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립지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 여부, 지원절차 등 자립지원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호시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퇴소 자립지원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지나고,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단, 취업 또는 대학 입학 등으로 인해 조기 퇴소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인 자도 지급 가능)가 퇴소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 구분 없이 지급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자활 지원 사례

“(요약) 제인(가명)씨는 결혼 이후 15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경찰을 통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연계되었다. 그리고 딸과 함께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입소하여 7개월간 심리치료, 의료지원, 이혼소송을 위한 법률지원과 취업지원 등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자립의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지난 해에 주거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어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폭력의 상처를 넘어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는 남편 때문에 제인씨는 생계를 위해 식당 일을 해야 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던 어느 아침, 남편은 제인씨에게 폭언을 하더니 부엌칼로 들이밀며 위협을 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맞닥뜨린 제인씨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집에서 뛰쳐나와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갔다. 결혼한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경찰서에 달려 온 제인씨는 제일 먼저 남편이 학교에 가있는 딸을 찾아갈 것을 우려해 경찰과 함께 딸을 데려왔다.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여성긴급전화1366의 긴급피난처에 가게 되었다. 아직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제인씨와 딸에게 낯선 사람들과 함께 낯선 곳에서 지내야 하는 긴급피난처에서의 일주일은 너무나 힘들었다.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제인씨는 딸과 함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인 OOO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곳도 낯설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제인씨는 무엇보다 류머티스 관절염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한 자신이 입소자들 간에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밥과 청소 당번 등을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쉼터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걱정스러웠다고 한다. 그러나 쉼터 원장님이 다른 입소자들에게 제인씨의 몸 상태 등을 알리고 서로 배려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제인씨 또한 쉼터에서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고, 다른 입소자들도 그런 제인씨를 좋아해주어서 7개월간의 쉼터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또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미술치료와 심리치료, 꽃꽂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제인씨는 직업훈련으로 한국봉제패션협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봉제교육을 받았다. 비록 손은 불편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해 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봉제교육은 제인씨에게 너무나 어려웠고, 도중에 류머티스 염증 수치가 높아져 병원에서 입원치료도 받아야 했다. 중도포기하려던 제인씨는 강사 선생님의 설득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무사히 6개월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다. 또 제인씨의 강인한 의지를 좋게 본 협회장님은 그녀를 발탁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출처. 「여성과인권」 통권 제19호 중에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3) 주거지원

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

■ **입주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 **입주 조건**

- 임대기간: 2년 원칙(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방식: 그룹홈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

■ **입주우선순위**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주거지원사업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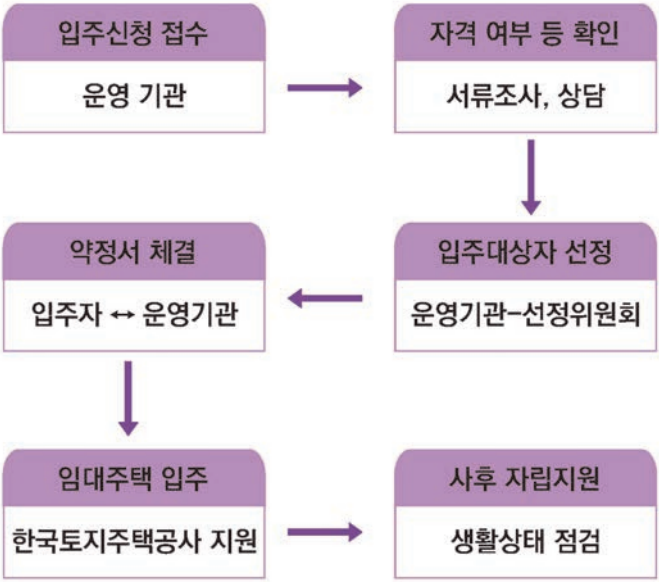

②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내용**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특례 적용

구분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신청 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4]에 의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4]에 의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지원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가해자 제외) ※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름 -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아동·청소년의 범위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구분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요건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 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입소한 피해자. 다만 퇴소하였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17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다만 퇴거하였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서류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특별지원보호시설의 경우 1년) 이상 입소 확인서 -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중 하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증거서류 신청 및 발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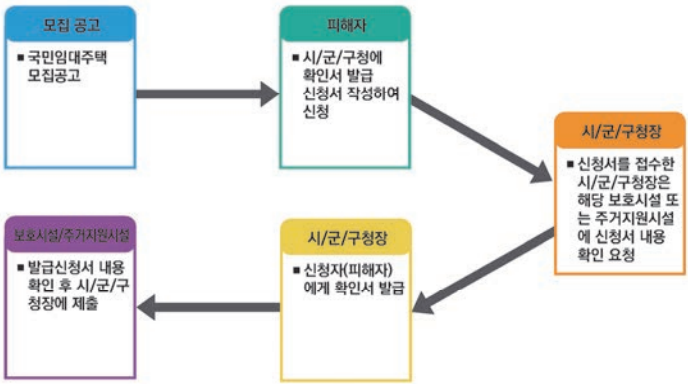

5. 자활지원센터(성매매피해자)

주요 내용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 일자리 제공사업 운영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직업훈련 및 진학·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
-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자활지원센터'편에 수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활지원센터 개관 ····· 73
- 일자리제공사업
  1. 공동작업장 ····· 74
  2. 인턴십 프로그램 ····· 75

●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자활지원센터 개관

■ 목적
-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
- 전업을 위한 훈련·준비단계에 대한 지원

■ 대상
-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지원이 필요한 자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중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자

■ 지원내용
-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 일자리제공사업 운영: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직업훈련 및 진학·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
-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

● 일자리제공사업

1) 공동작업장

■ **사업선정** 참여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습득, 직업탐색, 사회적응을 위한 일 경험 등이 가능한 사업

※ 제품포장과 같은 단순작업 지양

■ **지원금액**

- 1인당 월 703천원(2020년 기준)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 한하여 3인까지 추가 지원가능(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부양가족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근거서류 없을 경우 지원불가)

■ **지원조건: 월 100시간 이상 참여원칙**

- 월 100시간 미만으로 참여한 경우 일할계산 또는 시간당 7,03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있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월 150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월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1시간당 7,030원 기준으로 추가지원)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 시간으로 인정

■ **지원기간: 1년 원칙**

※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한해 최장 3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인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별 최소 10~30명 이내로 운영가능 (인턴십 프로그램 인원 포함)**

※ 상담소 및 지원시설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시 반영하고,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조정

2) 인턴십 프로그램

■ **사업선정**

- 개인별 상담 등을 통해 참여자 선호와 적성에 맞는 업종
- 사전에 사업수행업체(기관)와 제휴 또는 협약체결을 통해 운영

■ **지원금액**

- 1인당 월 703천원(2020년 기준)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 한하여 3인까지 추가 지원가능(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부양가족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근거서류 없을 경우 지원불가)

■ **지원조건: 월 100시간 이상 참여원칙**

- 월 100시간 미만으로 참여한 경우 일할계산 또는 시간당 7,03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혹이 충분하고 제휴업체(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월 150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월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1시간당 7,030원 기준으로 추가지원)
- 단,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가 업체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액에서 동 보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 **지원기간: 1년 원칙**

※ 1년 동안 인턴십을 참여한 대상자가 인턴십 기간연장을 희망할 경우 공동작업장 지원 기간(최장 3년) 중 잔여기간만큼 지원가능

■ **지원인원: 공동작업장 인원과 통합, 센터별 10~30명 이내에서 운영가능**

※ 상담소 및 지원시설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시 반영하고,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조정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사례

“업소를 나와 상담소에서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받으며 두 달 정도 안정을 취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가 없어 뭐라도 일을 해야 했고 그러자니 다니던 병원도, 진행중인 민사소송도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자격증도 하나 없어서 취직 자리를 구하거나 계획을 세우기에는 너무도 막막했다. 고민하던 나에게 상담원이 자활지원센터를 소개해 주었다.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해서 매일 자활지원센터로 나가면 참여한 시간만큼 지원금도 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직업훈련도 지원받고 공동작업장에서는 천으로 만드는 다양한 물품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했다. 열명이 넘는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서 낯설고 어색했지만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게 너무 너무 좋다. 들었던대로 자활지원센터는 정말로 힘들고 지루하지 않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곳이었다.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책도 읽고 같이 놀러도 가고 상담원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도 하고 진로교육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것을 다하는 곳이다. 병원을 많이 다녀야 하거나 법률상담 때문에 시간이 많이 빠질때는 좀 적게 받지만 최고 많이 참여할 때는 한달에 100만원이 좀 넘게 지원금을 받는다. 많지 않은 지원금이지만 서서히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는 저녁에는 화훼장식 가르치는 학원에도 다녀 볼 생각이다.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1년까지는 자활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도 부담없이 꽃집이나 조경하는 곳에서 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막상 업소를 나왔을때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막막했는데 이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 여기는 3년이라는 시간동안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빨리빨리 검정고시 치고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나는 2년만에 인턴십을 나가고 싶다.”

출처. 피해자A 지원사례(B자활지원센터)

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주요 내용

이 장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기관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편에 수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초기상담 ····· 78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 78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79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의료·법률지원 ····· 80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 81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 82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관련 정보 ····· 83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초기상담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초기상담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 여성긴급전화1366과 (2)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1577-1366)가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에 대한 내용은 16-2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지원 이외에 종합생활정보 제공, 생활통역, 가족상담 및 부부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상담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등을 위한 통·번역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고용,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사례관리
-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숙식지원 등 임시 보호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로 인도 및 안내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 및 안내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및 안내
- 정신적·육체적 안정 및 상담·치료 등 지원
- 그 밖의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및 인권보호에 관한 상담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 본국으로의 출국 및 체류 관련 지원
-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일

■ **입소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외국인 및 귀화자 등 포함) 및 동반 자녀

■ **보호기간** 2년 이내

※ 임시보호는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의료·법률 지원

1) 의료지원 주요 내용

■ **내용** 지역내 의사, 의료기관 등으로 의료 지원단을 구성하여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진료 및 치료, 진단서 발급, 건강관리 등 지원

■ **의료지원단 구성**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포함하여 구성

■ **문의** 전국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2)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법률지원 주요 내용

■ **내용**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체류 문제, 가정문제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변호사 등으로 자문단 구성

■ **법률지원단 구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분야, 출입국 관련 국적 등 체류자격 분야, 이혼 등 가사분야 등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이주여성의 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해 분야별 법률 상담 제공 및 수사·소송과정의 지원

■ **문의** 전국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 **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
- 직업교육훈련 및 취·창업 능력개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도록 지원

■ **주요 기능**

1.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2. 이주여성 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및 취업지원
   - 취·창업 교육 및 외부전문교육 훈련기관 연계
   -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생활문화 교육 등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
   - 취·창업 후 사후관리
3. 동반자녀의 육아 및 보육 지원 등

■ **입소 대상**

1. 입소를 희망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 자활 의지가 강하고 다음 요건의 1가지 이상을 갖춘 자
   - 법률적 문제(이혼 등 신분 정리)가 해결되어 국내 체류가 가능한 자
   - 자녀를 동반하고 이혼 소송 중인 자 중 기관장의 의뢰를 받은 자
2. 입소 이주여성의 동반 자녀

   ※ 운영위원회(입·퇴소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 가능

■ **입소기간**

1년 6개월(1회 6개월 연장 가능, 최대 2년)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 **내용**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의 주거 지원으로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 지원

■ **입소 대상**
- 쉼터 및 자활지원센터에 입소한 적이 있는 이주여성으로, 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입소를 희망하는 자
- 입소 이주여성의 동반자녀

■ **입소기간** 1년(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가능)

※ 입소자가 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 가능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관련 정보

정보. 성착취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 안내

■ **두레방 상담소**

- E-6비자(예술흥행비자)로 클럽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의료지원, 각종 노동 및 인권침해 관련 상담 업무
- 상담전화: 031-841-2609

■ **두레방 쉼터**

-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쉼터로, 법률 및 의료 지원 제공
- 문의: 두레방 상담소 (031-841-2609)

정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 근거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지원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18세 미만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자녀, 난민 및 자녀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주요 내용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료 등** 총진료비의 90% 지원(1회 500만 원 이내)
■ 신청 방법	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 부서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Q&A

Q. 외래진료비도 지원하는지요?

A.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보.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원 1(대한법률구조공단)

(1) 무료법률상담

- **대상**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내용**
  - 면접상담, 사이버(인터넷), 전화 상담
  - 이동법률상담차량(버스) 운영
-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2) 법률구조 제도

-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93만 6,000원)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내용**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Q&A

Q.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주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절도, 강도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정보.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원 2(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무료 법률상담

■ 대상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내용	면접 상담, 순회 및 출장 상담(쉼터, 시설 등), 인터넷 상담, 서신 상담, 전화 상담
■ 방법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유선 문의 또는 방문 (영어상담은 미리 전화로 예약)
■ 문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www.lawhome.or.kr)

(2) 무료 소송구조

■ 대상	소송이 필요하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지원이 필요한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내용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입양 등 가사사건 전반 및 관련 사건과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 등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및 무료 소송서류작성
■ 방법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유선 문의 또는 방문
■ 문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www.lawhome.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지원 Q&A

Q.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도와주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변경,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상실
- 인지, 친생자존부확인, 친생부인
- 미성년자 입양, 친양자입양, 파양,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혹은 정정, 성변경
- 부양, 상속
-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
- 이상의 사건들과 관련한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 강제집행, 이행확보 사건들과 필요한 경우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 등

정보.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센터 안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전국센터안내(총 10개소)**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서울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644-0644
경기도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경기도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1-8389-111
경상남도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912-0255
경상남도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338-2727
경상남도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253-5270
광주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62-946-1199
충청남도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41-411-7000
대구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3-654-9700
인천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2-431-5757

정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센터 안내**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

※ 20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지원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서비스 지원

■ **이용방법**

- 상담시간: 평일 09:00~22:00 (야간 18:00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운영)
- 전화: 일반전화, 휴대폰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

정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대상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 **대상**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호」 제5조(부당한 처우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1.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하여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등 사용자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함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의** 전국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례 1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고 살던 이주여성 B씨.

“날로 심해지는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던 어느 날 남편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B씨를 폭행한다. 한국어가 서툴던 B씨는 112 전화 신고를 하기 어려웠고, 알고 지내는 이웃도 없어 무작정 집 근처 지구대에 방문하여 가정폭력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경찰과도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가정폭력의 심각한 상황을 감지한 경찰의 조치로 B씨는 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와 함께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로 가게 된다. 하지만 언제 임시숙소에서 나가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한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던 B씨는 SNS에 자신의 상황을 알렸고, 게시글을 본 이주여성이 다문화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다문화센터를 통해 ‘A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로 의뢰되었다.
임시숙소에서 처음 만난 B씨는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였고, 상담원은 B씨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파악한 후 곧바로 B씨와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폭력을 당한 B씨의 건강을 확인하였다. B씨가 머물던 임시숙소는 5일 동안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진료를 받은 후 B씨와 자녀를 상담소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상담소는 이용시설이었기 때문에 B씨와 자녀가 머물 수 없었다. 이에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에 연락하여 입소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B씨를 쉼터에 인계하였다. 쉼터에서도 폭력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B씨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상담원이 있는 ‘A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와 함께 폭력피해에 대응하기를 희망하였다. ‘A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B씨에게 이혼과 가정복귀에 대한 심리상담, 필요하면 이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음을 전달하였다. 가정폭력피해 사건 진술 조사 동행을 마쳤을 때쯤 B씨는 남편과의 면담을 희망하였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 파출소에서 남편과 B씨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원이 남편을 면담하여 폭력에 대해 경고하였다. 남편은 폭력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B씨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혹여나 가정폭력이 재발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 측에 재발 우려 가정 등록을 요청하였고, B씨에게도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한 후 개입을 종결하였다.”

출처. 피해자B 지원사례(A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례 2

“필리핀 여성 H는 가수가 될 수 있다는 소개로 에이전시를 통해 한국에 왔지만 도착한 곳은 유흥주점이었다. 에이전시 사장은 일을 알려준다며 H의 몸을 만졌고 H는 첫날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무서워 제대로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업소에는 무대도 없었고 야한 옷과 진한 화장을 해야 했으며 할당된 T/C(테이블차지 Table Charge)가 있었다. H는 두 시간 단위의 T/C를 채우기 위해 업소에 온 남성들의 선택을 받고 노래방 기계가 있는 룸에서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참아야 했다. 업주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더 나쁜 클럽으로 보낸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성매매만 있는 클럽으로 보내진 여성을 보기도 했다.

한 달에 하루인 휴일에도 업주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었으며, 영업시간이 아닌 낮에도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다. 불법적 상황이 분명했지만 업주들의 경찰과의 거짓 친분 과시, 언어적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고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H는 쉼터 구조를 통해 업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성매매 피해 내용이 드러나 형사소송을 진행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가해자가 처벌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쉼터에서 심리지원과 대학교 어학당, 베이킹 프로그램 등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경제활동을 하며 민사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처.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서」 중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주요 내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 **초기상담**
-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수사·법률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보호시설로의 연계)**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편에 수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피해 유형의 분류 ····· 92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초기상담 안내 ····· 93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 안내 ····· 94
- 디지털 성범죄 및 센터 지원 관련 Q&A ····· 95

●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피해 유형의 분류

■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 피해 유형의 분류

- **유포**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 **유포협박** 실제 유포 여부를 불문하고 협박이 이뤄진 경우
- **불법촬영**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 **유포불안** 유포불안을 호소한 경우
- **사진합성** 사진이 기타 성적 촬영물과 합성된 경우
-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행해진 경우
- **몸캠피싱** 성적 촬영물을 요구한 후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해킹이 동반되기도 함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초기상담 안내

■ 상담 신청 및 방법

- 상담신청: 온라인 게시판(https://d4u.stop.or.kr/) 또는 전화(02-735-8994)
- 상담시간: 24시간 긴급상담전화 운영

☞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과 함께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등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삭제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① 피해촬영물 원본(영상/이미지파일), ② 사이트 URL(유포 시), ③ 피해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 등이 있습니다.

※ 위 정보 중에 한 가지 이상 필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 안내

■ 삭제지원 절차

초기상담을 통해 삭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피해촬영물 원본(유포 URL 포함)과 삭제지원 구비서류 수령, 각 플랫폼(웹하드, 성인사이트, SNS, P2P,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별로 유포 피해를 검색하여 삭제지원 진행. 접수 후 초기 3개월간은 집중 삭제지원기간으로 이후 일반삭제지원으로 전환하여 3년간 지속 지원(집중삭제지원 기간 3개월 동안은 피해자에게 월 1회, 총 3번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발송, 이후 연 1회 연간결과보고서 발송)

■ 상담신청

- 전화: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1366
- 온라인 게시판: http://d4u.stop.or.kr

■ 삭제지원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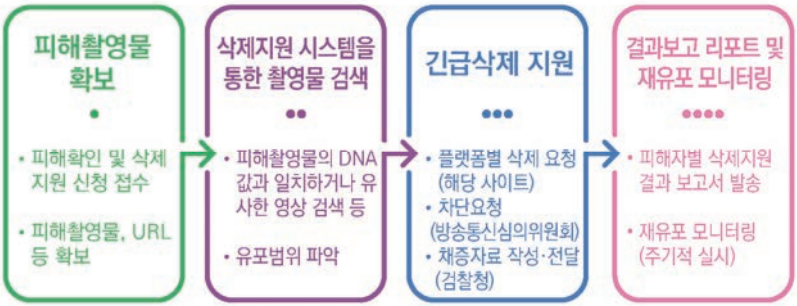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및 센터 지원 관련 Q&A

Q.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 없이 찍은 사진,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촬영에 합의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A.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래의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접수·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 (24시간 긴급상담전화 운영) 02-735-8994(내선 1번), https://d4u.stop.or.kr
민간기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경찰서 등 수사기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신고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1.js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하는 자료를 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http://www.kocsc.or.kr/sec/rnc/iPinCert.do?conText=%2Fmain&joinType=24&explain=true

Q. 디지털 장의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인정보·신고 내용의 비밀 보장 및 자료의 보안 차원에서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지원 관련 Q&A

Q.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	관련 문의 응대, 지원내용 안내, 피해자 긴급상담 등
삭제지원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발송
수사지원 연계	채증자료 작성 지원, 법률 및 수사지원 기관 연계
기타지원 연계	의료지원 연계, 보호시설 연계 등

Q. 모든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과 삭제지원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비용 지불 절차는 없습니다.

Q. 모든 지원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A. 상담 및 삭제, 기타 연계 지원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 가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법적인 동의서로 본인 실명 및 서명 기입이 필요하며, 추후 가해자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삭제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전화접수 또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신 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삭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URL(피해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 게시물의 주소), 키워드(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이 특정되어 검색 가능한 정보), 피해촬영물 원본*, 캡처 화면(URL, 키워드, 피해촬영물 등을 찍은 화면) 등이 있습니다. 이후 신분증과 구비서류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원본 없이 캡쳐본만 있을 경우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Q. 삭제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A. 삭제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게시글 등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각 플랫폼별로 크게 상이하나,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Q. 삭제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지원 시작 후 한 달 주기로 초기 3개월간 삭제지원 결과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삭제지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발송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1년 주기로 연간결과보고서, 지원 종료 시 최종결과보고서를 발송해드립니다.

Q.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 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삭제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꼭 가해자를 신고해야 하나요?

A. 가해자 신고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가해자 신고 없이도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각종 지원 과정에서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완벽한 삭제가 가능한가요?

A. 촬영물 및 게시글 내용,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완전한 삭제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삭제되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유포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주 묻는 질문

Q. 아주 오래전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신고가 될까요?

A.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피해 유형 및 발생 시점에 따른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피해 발생 장소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지나 신고가 불가능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포협박은 제2, 제3의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신고를 하되, 가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가족이어서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어떡하죠?

A.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지원기관 연계를 통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또 유포되었어요.

A.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최초유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례

“피해자 A씨는 채팅앱을 통해 한국계 외국 국적자인 가해자를 만났고,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가해자는 A씨가 잠든 사이에 A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였고, 가해자는 이 사진을 성인 사이트 등에 유포하였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사설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없었고, 업체에서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다. A씨는 뉴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센터로 연락을 하였다.

센터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A씨와 내방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전에 A씨는 외국 국적자는 수사가 어렵고 잡히더라도 낮은 형량으로 처벌될 거라는 이야기를 지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신고를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수사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OO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외국 국적자 처벌 가능성을 문의하였다.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고소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와 가해자의 연인은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며 A씨를 괴롭혔다. 심적으로 취약해져 있던 A씨는 사설업체에 지급한 삭제 비용 만큼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다.

센터는 우선 신속하게 삭제지원에 착수하였다. 사설 업체를 통해 삭제했음에도 검색엔진의 연관검색어에는 여전히 A씨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있었다. 센터는 검색 가능한 키워드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검색엔진에 연관검색어 노출 금지를 요청하여, A씨의 신상정보가 더 이상 연관검색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A씨가 합의를 철회하고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A씨는 합의를 취소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센터는 재판부에 유포 피해 사실을 해명할 수 있는 채증자료를 제공하였고, A씨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상담소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센터에서 제공한 채증 자료와 A씨가 받은 의료지원 기록은 피해의 심각성을 해명하는 증거로 채택되었고, 재판부는 1심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가해자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 판결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사설 삭제 업체에 대한 금전적 부담과 가해자의 합의 종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센터의 상담, 삭제, 수사·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에 이르는 종합적 지원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해 가고 있다. 특히 A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수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는 가해자 실형 선고로 이어져 많은 용기를 얻게 되었다.”

출처.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중에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III.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타 관련 제도 및 정보

이 장의 구성

이 장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타 관련 제도 및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장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 공통**
  1.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가정폭력 피해자**
  1.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의 제한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3.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4. 가정폭력 신고의무
  5. 수사/공판단계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성폭력 피해자**
  1.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의 제한
  2.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3.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4. 성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5. 수사/공판단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조치와 신원 및 사생활 보호

- **성매매 피해자**
  1.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채권) 무효
  2.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안내
  3.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와 비밀보장
  4. 신고포상금 제도
  5. 수사/공판단계에서의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조치와 신원 및 사생활 보호

● 여성폭력 피해자 공통

1.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신청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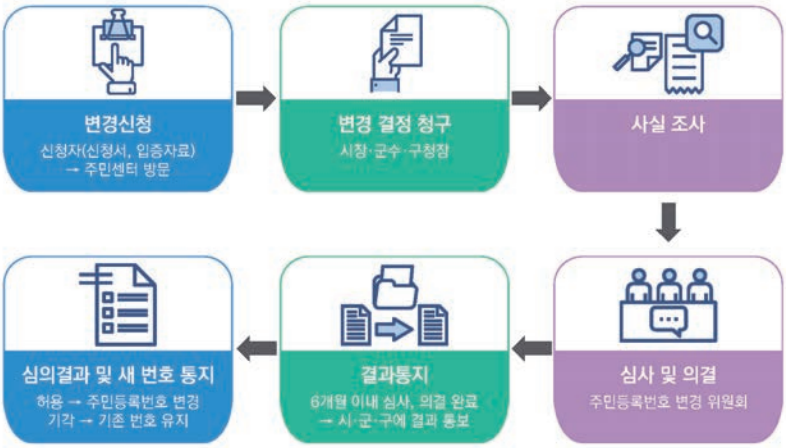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예시)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성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포함)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성폭력 피해 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해당 수사기관(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성매매 피해자	상담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이용확인서	-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해당 수사기관(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해당 수사기관(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044-205-6632~6639)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나 관련 서류는 피해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타 관련 제도 및 정보

구분	내용
가정폭력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의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가정폭력 신고의무
	수사/공판단계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1.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의 제한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내용**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없음**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 **신청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자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 등)한 자

■ **신청방법**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필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필수)
- 첨부서류(증거서류)*

***열람·발급 제한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아래 중 택1)**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여성긴급전화1366 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가정폭력 피해자는 열람·발급 제한을 신청한 후 같은 방법으로 해제신청도 할 수 있음

피해자 정보를 조회, 노출한 사례

사례 1.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컴퓨터에서 피해자 정보를 조회, 노출한 사례

가해자 A씨는 이혼 후 재산세 납부 청구서를 사유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B씨는 가해자인 A씨 옆 민원인 컴퓨터에서 피해자 C씨의 정보를 조회했고, 가해자 A씨는 민원인 컴퓨터에 노출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피해자 C씨를 찾아갔습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표시를 확인할 경우, 교부제한자에게 주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사례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사실이 접수되자 담당 공무원이 가해자에게 이 사실을 즉각 알려 노출된 사례

D구청 담당자는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들어오자, 바로 가해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했습니다. 가해자는 서면을 받고 피해자가 D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대상자(가해자)가 등·초본 서류 발급을 신청했을 때, 가해자에게 제한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단, 피해자가 교부 제한을 신청한 당시에는 제한대상자(가해자)에게 신청내용(피해자의 신청으로 등·초본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출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서」 중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3.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 신청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정구성원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제도]

■ **내용**: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 할 경우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하고, 가해자(친권자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신청방법**: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주소지 외 취학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아동 비밀전학 제도]

■ **내용**: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가해자(친권자 등)에게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비밀전학은 교육장 학교 지정 전학(학습권 보호 전학)으로 가능(초·중·고등학교)

■ **처리기관**

- 초·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교육청

※ 타 시도로 전학 시 전입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만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학교장 의견서(담임교사가 서명 후 학교장 직인 날인)
- 가정폭력 피해자 증빙서류(택일):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지자체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지자체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침 확인 필요

4. 가정폭력 신고의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수사/공판단계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수사단계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청구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조치 청구 (검찰 수사단계)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공판단계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임시조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보호처분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등에 대한 (물리적, 전기통신적)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하는 제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타 관련 제도 및 정보

구분	내용
성폭력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의 제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성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수사/공판단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조치와 신원 및 사생활 보호

1.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의 제한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내용**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없음

2.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 **열람·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친족 성폭력 피해자로서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한 사실이 있거나 친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친족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 등)한 경우

■ **열람·발급 제한신청 방법**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 및 증거서류* 제출

※ 피해자는 열람·발급 제한신청 후 같은 방법으로 해제신청도 할 수 있음

***열람·발급 제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택일)**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3.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 **목적**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 아동 등의 건강한 보호 및 조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

■ **대상** 아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돌봄서비스 이용(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양육지원, 활동보조인 등) 시 자부담 비용분에 대해 지원

※ 돌보미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가족 제외)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 원칙(연장 12개월 포함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도 원칙(연장 6백만 원 포함 최대 9백만 원까지 가능)

※ 지원 기간 및 금액한도 지원 후에도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 및 심의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

■ **문의** 시군구,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자에게 돌봄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 후 돌봄비용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

4. 성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 **내용**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함

기존	개정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음.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 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1.29.)

5. 수사/공판단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조치와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수사단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 조사제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954호, 2019. 11. 14. 발령·시행) 제218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

수사단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진술조력인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공판단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

공판단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영상물의 증거활용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성폭력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
증거보전 청구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2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정보 삭제 등 요청	성폭력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기타 관련 제도 및 정보

구분	내용
성매매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채권) 무효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안내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와 비밀보장
	신고포상금 제도
	수사/공판단계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조치와 신원 및 사생활 보호

1.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채권) 무효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2.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안내

■ **내용**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탈성매매 여성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지원대상**
-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서 탈성매매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
-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 **지원내용**
- 상환유예: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동안 채무상황을 유예(연기)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 분할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 이자면제: 상환기간 내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
- 신청비용(5만원) 지원

3. 성매매피해자등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와 비밀보장

■ **근거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취학지원 내용**

구분	성매매피해자등 가족의 취학지원 내용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입학을 승낙하여야 함 -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함 -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하여야 함
그 밖의 각급 학교	- 각급 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함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함

■ **비밀보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4. 신고포상금 제도

- **내용** 아동·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 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포상 대상**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미성년자도 가능)
- **신고 방법** 전화(112), 가까운 수사기관 방문, 안전Drea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5. 수사/공판단계에서의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조치와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수사단계에서의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 조사제	-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등에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매매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01호, 2016. 7. 1.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수사기관은 성매매 등을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사람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수사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 미약한 사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

수사단계에서의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매매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이나 성매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 다만, 성매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국선변호인 지정	- 성매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 성매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 외국인여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또는 보호의 집행(「출입국관리법」 제51조)을 해서는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 ·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공판단계에서의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성매매 관련 범죄, 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재판을 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 성매매 등에 대한 심리는 그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를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사람 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은 성매매 등을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사람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 미약한 사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

공판단계에서의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영상물의 증거활용	피해자 진술 등을 촬영한 영상물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이 진술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증거보전 청구	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해당 성매매 등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 검사는 외국인여성의 성매매피해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매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검사는 성매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매매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매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2조제1항·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정보 삭제 등 요청	성매매 피해자는 인터넷에 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Ⅳ.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락처

이 장의 구성

이 장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락처를 수록하였습니다.

1.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 p. 132
2. 상담소
2-1.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p. 133
2-2. 전국 성폭력 피해 상담소 p. 141
2-3. 전국 성매매 피해 상담소 p. 147
2-4. 전국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p. 149
3. 전국 해바라기센터 p. 150

☎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

※ 인구 밀집 도시인 서울과 경기는 2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결됩니다.

※ 기준: 2020년 7월

구분	주소	전화번호
중앙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빌딩 4층	1366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3층	02-1366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	051-1366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53-13	053-1366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77번길 20 경인센타 503호	032-1366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062-1366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 대전YWCA 2층	042-1366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62 시티빌딩 3층	052-1366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영통우리빌 가동 303호	031-1366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54-1	031-873-1366
강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 1길 13	033-1366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충북미래여성플라자 B동 2층	043-1366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92, 601호	041-1366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063-1366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가족재단 504호	061-1366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12길 10, 2층	054-1366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179-18	055-136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6길 23	064-1366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 기준: 2020년 7월, 국비 지원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서울	한국여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2길 28, 신일빌딩 4층	02-953-1704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	02-2263-646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부설가정폭력 관련상담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19길 9-15	02-2238-6551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2길 7 3층	02-2297-2911
	월계우리가족상담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길 15	02-904-0179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48	02-326-1366
	서대문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15-2	02-364-0413
	(사)남성의 전화 부설 서울가정폭력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1016-1호)	02-2653-1366
	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213호	02-2062-1366
	사단법인 늘푸른상담 협회 부설 가정행복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08-1, 하나로빌딩 2층	02-6083-9191
	서울강서양천여성의 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59 인폼빌딩 5층	02-2605-8455
	동산가정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길 10-10	02-599-7646
	잠실가정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보정빌딩 402호	02-2202-7806
	강동구가정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4 (명일동)	02-429-2121
부산	(사)부산여성장애인 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4층	051-583-7735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55번길 15 (전포동)	051-817-4344
	부산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05,06호	051-558-8833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2	051-753-1377
	(사)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90 동양프라자 404호	051-531-1366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81번길 2	051-462-7177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49번길 29 705호(범일동, 호림빌딩)	051-469-2987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488 (대연동)	051-623-1399 051-623-1488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90번길 13 대방상가 3층 305호	051-333-1360
	사하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133-1 (괴정동)	051-205-8296
대구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54(범어동)	053-745-4501
	대구여성장애인통합 상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410(송현동)	053-637-6057 ,6064
	영남가정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49길 6(신암동)	053-953-2848
인천	(사)인천여성단체 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5(주안동)	032-865-1365
	서인천가족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47 서인천새마을금고 3층	032-564-1366
	중구가정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39번길 2	032-761-707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29	032-865-1120
	가족사랑상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03번길 120	032-874-6661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314	032-437-1141
	(사)인천내일을여는집 가족상담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계양구사회복지회관 지하1층	032-543-7179
광주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 (농성동)	062-363-0487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79번길 4-1 (주월동)	062-654-0420
	광주YWCA가정상담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46번길 1	062-672-1355
	송광한가족상담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96번길 66 대덕훼미리상가 3층	062-452-1366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대전	대전YWCA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대흥동)	042-255-0004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368번길 81	042-625-5441
	대전가톨릭가정폭력 상담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63(2층)	042-636-2033
울산	울산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호	052-265-5570
	동구가정성폭력 통합 상담소	울산광역시 동구 내진길 18 2층	052-252-6778
	(사)울산여성회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41 2층	052-287-1364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3 성우현대 아파트 상가 208,209호	052-295-0310
경기	사단법인 수원여성의 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	031-232-7795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 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주민신협행복빌딩 3층	031-751-2050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 상담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9	031-442-5385
	(사)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통합 상담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30 대하빌딩 501호(정왕동)	031-496-9390
	이천가정•성상담소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13 서영빌딩 F층	031-638-7200
	행가래로 의왕가정·성 상담소	경기도 의왕시 전주남이길 23-4(오전동)	031-452-1311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우림빌딩 501호	031-243-46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546 1층 (야탑동)	031-707-6661
	부천가정법률상담소 부천지부 부설 부천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272, 4층	032-663-2313
	행복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13, 4층	032-612-1366
	(사)행복터 부설 용인가정상담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0번길 3, 골드프라자 801호	031-286-1758
	경기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64	031-419-1366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안산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1, 네오빌딩 405호	031-486-4366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4, 2층(호계동)	031-427-13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평택안성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84-6 여성회관, 중1층	031-611-4252
	화성가정상담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2393, 303호(동창빌딩)	031-296-1055
	광명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광명시 도덕 공원로 64-1	02-2060-0245
	21가정사랑훈련학교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 8번길 35-10, 301호(산본동)	031-391-4862
	광주열린상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97번길 18	031-766-3395
	(사)김포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 68번길 20 (북변동) 종합복지회관 2층	031-986-0136
	(사)정해복지부설 하남행복한가정상담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30-5, 6층	031-794-4111
	여주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45번길 8	031-885-7651
	양평가정상담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47,2층	031-775-4982
	고양YWCA가족사랑 상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층	031-921-1366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71번길 24	031-574-7189
	(사) 사랑깊은뜰 부설 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596번길 19, 골드타워 402호	031-876-7544
	(사)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129번길50, 3층	031-553-9976
	양주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양주시 독바위로 5, 306호	031-864-7546
	사단법인 해피패밀 포천지부 희망가족 상담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19번길 20	031-531-2821
강원	춘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5	033-257-4687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사회복지센터307호	033-765-1366
	강릉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454 강릉시평생학습관 2층	033-652-9556
	동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188 2층	033-535-4943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삼척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2길 72-6	033-575-1366
	행복만들기상담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서로3번길 15	033-344-1366
	(사)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강원도 강릉시 토성로 162 벽산빌딩 3층	033-643-1982 033-643-1985
	태백가정폭력상담소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40	033-554-4005
	속초가정폭력상담소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84, 세광빌딩 2층	033-635-3520
	(사)너브내 가족상담센터 부설 홍천가족상담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남산마을길1길 8	033-433-1367
	철원가정폭력상담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텃골3길 17	033-452-1566
충북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36번길4	043-268-3007
	영동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212-1	043-742-8482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5	043-257-0088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 21길 34 복합복지관301호	043-842-988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천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043-645-5690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54	043-873-1330
충남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35	041-936-7941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순천향로 1060	041-546-9191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67 운암빌딩 2층	041-354-2050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호산로 57 (삼호아파트상가 201호)	041-450-7366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121-32 2층	041-631-3939
	가족성장상담소남성의소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8로 5-24, 2층	041-572-0115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89-4, 삼정빌딩601호	041-578-1145
	공주시가족상담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제민천3길 22(중학동)	041-854-1366
	해뜰가족상담소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13-19, 충무회관 3층	041-547-5004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율지8로 60	041-668-8566
	논산YWCA 가정폭력상담소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98번길 29-2	041-736-8297
	새샘가족상담센터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32, B동 3층	041-943-1366
	예산가정상담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73, 1층	041-334-1366
전북	남원YWCA통합상담소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5	063-625-1318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7	063-244-0227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338 3층	063-287-7325
	(사)군산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 7길 8	063-445-228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부설 가정 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6-1	063-442-156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 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68, 2층	063-851-5113
	익산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72-1	063-858-919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 부설 가정 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348	063-535-8223
전남	(사)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2층	061-285-1366
	여수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120, 3층	061-654-52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부설 순천 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행중길 5	061-753-9900
	광양YWCA 여성상담 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9	061-761-1254
	고흥나누리상담센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62-2, 2층	061-832-1360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18-1	061-371-1366
	행복한가정상담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061-461-1366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07, 월암빌딩 5층	061-454-1365
	함평열린가정상담센터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남일길 52, 1층	061-324-1366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30-1	061-352-1322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10번길 6-2	054-284-0404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41, 3층	054-463-1386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054-534-5999
	문경열린종합상담소	경상북도 문경시 남부3길 19	054-555-8207
	칠곡종합상담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69-35	054-973-8290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58 일선빌딩 6층	054-277-5418~9
	(사)포항생명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419번길 21, 대동우방타운상가 120동 201호	054-242-0015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62 (흥해종합상가 A동 201호)	054-262-3554
	포항미래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탑산길10번길7, 2층	054-255-1192
	희망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선착로 12	054-256-567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포항지부 부설 포항가정폭력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7, 율정빌딩 201호	054-283-7555
	경주가정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41번길 7, 3층	054-749-1366
	안동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2-1, 3층	054-856-4200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215	054-638-1366
	샘물가족상담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85-1	054-635-9191
	영천가정문제상담소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중앙3길 30, 3층	054-333-9125
	상주가정문제상담소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중앙로 156	054-541-6116
	경산가정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초등길 3	053-814-9191
	쉼터한알가정폭력상담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 181-21	054-862-9256
	의성가정폭력상담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41	054-832-2666
	울진가정폭력상담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26	054-782-1153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경남	진해가정상담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50	055-551-2332
	마산가정상담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3길 5	055-296-912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마산지부 부설 창원가정상담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3번길 7 (대한빌딩 401호)	055-261-028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 부설 진주가정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60, 3층	055-746-7988
	사천YWCA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126 3층	055-834-1253
	(사)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92-25 2층	055-326-6253
	(사)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233 (마루애빌딩 503호)	055-326-8291
	(사)거제가정상담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3길 22 1층	055-633-7638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4길 94	055-640-7795
	양산가족상담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서일동 2길 8 2층	055-362-1366 055-366-4001
	양산가정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6길 19	055-366-6661
	고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87-1 상가 2층	055-673-2911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2층	055-864-1366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관 3층	055-934-1366
제주	(사)서귀포상담센터 부설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42번길 46 5층	064-732-3279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3길 1-4 4층	064-753-4980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29 3층	064-726-3277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 3층	044-850-3091

☎ 전국 성폭력 피해 상담소

※ 기준: 2020년 7월, 국비 지원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성산동)	02-739-8858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 B2	02-338-8043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마길 8-13	02-825-1272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3, 오성빌딩 301호	02-883-9284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02, 301호 (시흥동, 동하빌딩)	02-896-0401
	이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20-1 성준빌딩 5층	02-3281-1366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86. 808호 (오류동, 동선오피스텔)	070-8128-1366 02-2688-1366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 10-10. 4층	02-599-7606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02호	02-3675-4465~6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101동 410호	02-3013-1367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44 덕화빌딩 6층 602호	02-902-3356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장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57 려산빌딩 지하1층	02-2658-1366
	북한이탈여성 성폭력피해상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39 목동트윈빌 131호	02-2651-1366
	꿈과희망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6 (신대방동)	070-7503-1366
	꿈터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14	02-6083-4971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부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5(남천동)	051-624-5521
대구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6길 16 (평리동) 3층	053-566-1900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봉덕동)	053-471-6483
인천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42(간석동)	032-451-4091~5
	(사)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간석동)	032-424-1366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37-10 스카이빌라트 107동 101호	032-506-5479
광주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삼호센터별관 102호	062-521-1360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16 (4층)	062-673-1366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82번길8	062-654-1366
대전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 9 월평빌딩3층	042-223-8866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길 15-4	042-637-1366
울산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27(3층)	052-245-1366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장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 402호	052-246-1368
세종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044-862-9191
경기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0-33, 802호	031-396-0236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프라자 302호	032-328-9713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149	032-655-1366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92 태평동락커뮤니티 3층 303호	031-755-2526
	용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8번길 11	031-281-1366
	(사)원선복지회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105번길 29	031-658-6614
	하남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205번길 27 서해상가4층	031-796-1274
	안산YWCA여성과 성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광덕서로 66, 412호	031-413-9414
	(사)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129번길 13 순흥빌딩	031-797-7031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장애)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031-344-4401
	연천행복뜰상담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131	031-832-1315
	성폭력상담소'함께'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44번지 마이프라자 5층 502호	031-946-2096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5, 2층(상패동)	031-867-3100
	의정부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장애)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426(금오동4층)	031-840-9203
	포천가족성상담센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71 (정우빌딩3층)	031-542-3171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46, 301호 (금곡동, 양지빌딩)	031-558-1366
강원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	033-375-1366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담길 73	033-563-8666
	속초성폭력상담소 (장애)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307 (2층)	033-637-1988
충북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15-2 3층	043-252-0966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 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	043-263-2000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제천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5길 12 (명동 190-3)	043-653-1331
	충주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 21길 34 (복합복지관 302호)	043-845-1366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장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15-2 2층	043-224-9414
	영동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회동로 212-1	043-743-1366
	단양한스심리상담센터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 상봉로 274 황이정승빌딩2층	043-422-3004
충남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6 (영성동) 2층	041-564-0026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301호	041-592-6500
	(사)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20길 12	041-561-0306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1길 44-11 4층	041-852-1950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장애)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0-14, LK빌딩2층	041-541-1514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충청남도 태안읍 후곡로 62, 202호	041-675-9536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121-32, 2층	041-631-3939
	예산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10, 101호	041-335-1311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69번길 10-3	041-541-0119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12-4	063-236-0152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7길 8	063-442-1570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73	063-537-1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53-1	063-546-8366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67	063-223-3015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5층)	063-834-1366
전남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로 6(2층)	061-666-4001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104	061-753-1366
	나주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중앙로 50	061-337-1366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18	061-381-1366
	해남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30	061-533-9181
	무안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22-1	061-454-1360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외대화길 27 하나캐슬 203동 101호	061-324-1388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61, 2층	061-283-4767
경북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 40번길 8-3 3층	054-277-9540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54-11	054-777-1520
	경산로뎀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66	053-853-5276
	새경산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41	053-814-1318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중앙로 60-1	054-843-1366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12길 18-1, 1층	054-443-1366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41	054-463-1386, 1388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054-534-9996
	문경열린종합상담소	경상북도 문경시 남부3길19	054-555-8207
경남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42 토월복합상가 725호	055-283-8322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504호	055-244-8400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11번길 16	055-546-8322
	진주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477번길 11 2층	055-747-1366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1길 4(항남동)	055-648-2070
	김해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95 화성빌딩 202호	055-329-6451
	양산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61, 204호	055-366-6676
	창녕성건강가정 상담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	055-521-1366
	하동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	055-884-1360
	거창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70 2층	055-944-1828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804호	055-241-5041
	밀양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68 여성회관 내	055-391-1366
	함안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산2길 70, 1층	055-587-1367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거제시 탑곡로75, 2층 (근로자가족복지회관)	055-682-0361
제주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1길 3	064-748-3040
	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84	064-756-4008

☎ 전국 성매매 피해 상담소

※ 기준: 2020년 7월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특별시 다시함께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4층	02-814-3660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85 3층	02-474-0746
	성매매피해상담소 이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8-4, 2층	02-953-6279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48 2층	02-3394-7946
	여성인권센터 보다	서울특별시 정릉로 52길 8-9 (송은빌딩)	02-982-0922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40 은혜빌딩 6층	010-7705-1318
부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192 흥아맨션 4층 501호	051-246-8297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3로 1 선프라자 408호	051-816-1366
대구	민들레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53-13 2층	053-430-6020
	힘내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83 2층	053-422-8297
인천	희희낙낙상담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1 수림빌딩 10층	032-501-8297
광주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29, 2층	062-232-8297
대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53 4층	042-223-3534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울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81, 4층	052-249-8297
경기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 Us'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92 (태평동락커뮤니티) 302호	031-747-0117
	어깨동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 녹산빌딩 7층	031-222-0122
	두레방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 15	031-841-2609
	여성인권센터 쉬고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77, 2층	031-948-8030
강원	춘천길잡이의집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31 춘천시민복지회관 5층(보건소 옆)	033-243-8297
충북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길 5 105호	043-257-8297
충남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91 영진빌딩 3층	041-575-1366
전북	전북현장상담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76 3층	063-232-8297
전남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151(2층)	061-276-8297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144-1, 2층	061-753-3644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35	061-662-8297
경북	경북성매매피해상담센터 새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054-231-8297
경남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	055-246-8297
	여성인권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02 대남상가 304호	055-273-2241
제주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84 효은빌딩 4층	064-751-8297

☎ 전국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 기준: 2020년 11월

구분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 서울글로벌센터빌딩 405호	02-733-0120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8	053-476-7600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52-8(간석동)	032-446-0091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길 15-2 한정빌딩 4층	043-223-5253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18, 3층 1호	041-566-1366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5층)	063-255-1366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당가두로 22-1(2층)	061-282-156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03 흥국생명빌딩 3층	064-722-6242

☎ 전국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16개소

※ 기준: 2020년 11월

센터명	주소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1층	경찰병원	02-3400-1700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보라매병원	02-870-1700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	부산의료원	051-501-9117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대구의료원	053-556-8117
인천동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032-582-1170
인천북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280-5678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층	조선대병원	062-225-3117
경기북동부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의정부의료원	031-874-3117
경기서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10 단원병원 신관 7층	단원병원	031-364-8117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	043-272-7117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1층	단국대병원	041-567-7117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지하 1층	전북대병원	063-278-0117
전남동부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순천성가롤로병원 별관	성가롤로병원	061-727-0117

센터명	주소	위탁병원	연락처
경북북부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 1층	안동의료원	054-843-1117
경북서부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 김천제일병원 7층	김천제일병원	054-439-9600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74	마산의료원	055-245-8117

해바라기센터(아동형): 7개소

센터명	주소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연세의료원	02-3274-1375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40길 32 (동인동2가 244-1) 2,3층	경북대병원	053-421-1375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2층	가천대 길병원	032-423-1375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전남대병원	062-232-1375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분당차병원	031-708-1375
충북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222(교현동, 보성빌딩 4층)	건국대 충주병원	043-857-1375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뱅크빌딩 2층	전북대병원	063-246-1375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6개소

센터명	주소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	(본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0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지하1층	서울대병원	02-3672-0365
	(별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층		02-745-0366 ~0367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서울중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 6가 18-79)	국립중앙의료원	02-2266-8276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S동(융합의학연구동) 3층	부산대병원	051-244-1375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병원	042-280-8436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울산병원	052-265-1375
경기남부	(거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79번길 7, 도병원약국 3층	아주대병원	031-217-9117
	(통합)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원천동, 아주대학교 병원 내)		(지속) 031-215-1117 (응급) 031-216-1117
경기북서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명지병원	(통합) 031-816-1375 (응급) 031-816-1374
강원서부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강원대병원	033-252-1375

센터명	주소	위탁병원	연락처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 강릉동인병원 별관	강릉동인병원	033-652-9840
강원남부	강원도 원주시일산로 2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문창모기념관 5층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033-735-1375
전남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영광기독병원 6층	영광기독병원	061-351-4375
전북서부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59 원광대병원	원광대병원	063-859-1375
경북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성루가관 지하3층	포항성모병원	054-278-1375
경남서부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경상대병원	055-754-1375
제주	(본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2층(연동, 한라병원)	한라병원	064-749-5117
	(별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5-3 별관 3층		064-748-5117

※ 2021년 개소 예정: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032-651-1375

부록 1. 자원연계

이 장의 구성

이 장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연계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구분	자원연계 기관/지원제도	쪽
피해자 임시보호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경찰청)	157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 검찰청)	158
정신건강 상담 및 범죄피해 심리평가	정신건강복지센터	159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159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검찰청)	160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 사유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제도'	161
	피해자 여비 지급 제도	163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64
	스마일센터(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165
	피해자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166
법률지원	법률홈닥터	167

구분	자원연계 기관/지원제도	쪽
자립·자활지원/창업지원 및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68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69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여성새로일하기센터)	169
	국민내일배움카드제	170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70
	자활근로사업단	171
	여성 창업 경진대회	171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172
	국민임대주택	172
	행복주택	17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17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74
	주거급여	174
	긴급주거지원	175
	이전비(이사실비) 지원제도	175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76
	신용회복위원회	176
아동·노인 보호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177
	노인보호전문기관	177
	지역아동센터	178
	미혼모·부 초기지원	178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79

정보. 알려드립니다! 중위소득과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연계 정보를 수록한 이 장의 수록 내용을 보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는 용어가 많이 언급됩니다. 이 장에서 언급된 중위소득과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의 정의와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 577	474만 9,174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562만 7,771	650만 6,368	738만 9,715	827만 3,062

※ 9인 이상 가구는 8인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2만 7,158	89만 7,594	116만 1,173	142만 4,752	168만 8,331	195만 1,910	221만 6,91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0만 2,878	119만 6,792	154만 8,231	189만 9,670	225만 1,108	260만 2,547	295만 5,886
주거급여 (중위소득45%)	79만 737	134만 6,391	174만 1,760	213만 7,128	253만 2,497	292만 7,866	332만 5,37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7만 8,597	149만 5,990	193만 5,289	237만 4,587	281만 3,886	325만 3,184	369만 4,85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분류: 피해자 임시보호

●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경찰청)

■ 대상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나 보복범죄우려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필요한 자
- 그 외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내용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방화 등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찰관서에서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임시 거처할 숙박업소를 미리 선정 후 범죄피해 발생 시 임시숙소 제공 및 단기간(1~5일)의 숙박비용 지원

■ 절차

피해자 신청(출동경찰관 또는 담당 수사관) → 심사권자 승인 → 숙소연계

■ 문의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피해자보호계)

●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 검찰청)

■ 대상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의 신고자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그 친족 등에 해당하고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

■ 내용

- 시설 유형: 주택, 오피스텔, 원룸, 검찰 공무원 숙소, 기타 일시적인 거주시설 등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이 마련한 보호시설을 이용(무료)
- 이용 기간
  - 원칙적으로 보호시설 관리위원회의 사용허가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재판종료 시까지
  -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요청 검사의 사용기한 연장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소명될 경우에 한하여 연장 허가

■ 절차

담당 검사가 대검 또는 보호시설이 있는 검찰청에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요청서 제출 → 대검 또는 검찰청에 있는 보호시설 관리위원회에서 사용허가 여부 결정 →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분류: 정신건강 상담 및 범죄피해 심리평가

●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상 지역 주민

■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 대상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

■ 내용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평가, 상담을 통해 범죄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문의 전국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혹은 청문감사담당관실 (피해자보호팀)

분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검찰청)

■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내용**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

- 치료비: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 비용 제공
- 생계비: 범죄피해자 가족 생계비* 지급(최대 6개월)
  * 1인 가족 50만 원, 2인 가족 80만 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 원씩 증액
- 학자금: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 지원
- 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400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 **방법**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 검찰청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 사유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제도'

■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7가지〉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급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23만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급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원	1회
	전기 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 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피해자 여비 지급 제도

■ **대상**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중 야간(21:00~06:00)에 경찰관서에서 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

  ※ 범죄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진정인은 해당 없음

■ **내용**

- 강력범죄 등 범죄피해를 당한 직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사 협조를 위해 야간에 경찰관서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제도
- 여비 24,000원 지급

■ **절차**

사건담당자가 여비 지급여부 판단 → 수사지원팀에 제출 → 여비 지급

■ **문의**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피해자보호계)

분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상 범죄로 인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 내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 주요 지원내용

종류	지원 내용
긴급구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근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범죄현장에서 상담, 피해자 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정리(청소), 청소지원 등 피해 초기에 신속한 긴급구호 실시
신변보호	보복범죄대비 위치추적장치 지급, 법정 동행, 법정 동행 및 수사기관 동행, 임시주거시설 연계
주거지원	임대차보증금 담보·저리대출 지원, 임대주택 연계지원
치료비	피해자가 범죄피해로 인해 지출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
심리 치료비	범죄피해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임상심리상담사 등 일정한 자격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실비 지원
간병비 등	- 간병비: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생계 등의 사유로 가족이 간병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비용 지원 - 기타 부대비용: 의료보조기구가 필요하거나, 원거리 치료시설 이용이 필요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 지원
생계비 등	달리 부양을 제공할 친족 등이 없는 피해자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 지원
현장 정리비	피해자가 주거, 관리하는 정주 가능한 건조물이 범죄피해로 오염·훼손되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실비 지원
취업 지원비	피해자 본인이 신체, 정신 피해를 입은 후 구직하고나 하거나, 가족 등 기타 범죄피해자가 새롭게 생계를 떠맡게 되어 구직하여야 할 때 그 훈련비 및 부대비용 지원
기타	- 범죄피해자 상담(심리,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피해자 구조제도 안내 등) - 법정모니터링

■ 방법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지원을 의뢰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 상담 신청

■ 문의 전국피해자 구호전화(☎1577-1295)

● 스마일센터(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 **대상**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그 가족

■ **내용**

-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심리상담 및 진단평가,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범죄로 인하여 기존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 **방법(지원절차)**

스마일센터에 지원 요청(피해자 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경찰·법원) → 접수 → 접수 사례회의 → 지원

■ **문의**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02-333-1295) 혹은 대표 홈페이지(www.resmile.or.kr)

● 피해자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 대상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피해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 해당하고
-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내용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손목시계 형태의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위급 시 비상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실시간 위치추적이 됨으로써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호출기를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 사용
-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복의 위험이 현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기간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계속하여 연장

■ 절차

위치확인장치 사용신청서 작성 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거소지 관할 검찰청 제출 → 담당 직원이 검사에게 신청서 즉시 전달 → 검사 결정 → 피해자 지원실에서 비상호출기 교부

※ 경찰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분류: 법률지원

● 법률홈닥터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 내용
-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민사, 가사, 행정 등 범죄피해와 관련된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관내 복지기관 및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또는 예약 방문 상담 등의 형태로 진행
-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 기관 연계: 범죄피해와 관련된 민·형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이송
  ※ 직접 소송 수행 업무는 제외
-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법률분쟁 방지 및 조기 해결을 위하여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

■ 방법 방문 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신청

■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

분류: 자립·자활지원/창업지원 및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 **대상**

- 1유형: 만 18~69세 대상으로 중위소득층(생계급여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성원) 및 취업취약층(결혼이민자, 미혼모·한부모,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비주택거주자 등)
- 2유형: 청년층(만 18~34세) 및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만 9,174원) 중장년층(만 35~69세 이하)

■ **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참여 시 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 소득수준 등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대상**

- 1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장애인
- 2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의 저소득층 만 18~69세 장애인

※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 여부를 판단

■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 2단계: 직업능력 향상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로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자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

■ 내용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 방법
- 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2주 이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내용
복지·보건·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활근로사업단

■ **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 여성 창업 경진대회

■ **대상** 사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등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 **내용**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육성

■ **방법**
- 신청방법: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서 신청
- 지원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참가업체 신청(3~5월) → 참가업체 선정(6월) → 선정업체 지원(6~10월) → 사후관리(11~12월)

■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분류: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5만 8,439원)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총자산: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1600-3456)
- LH 마이홈(☎1600-1004)

● 국민임대주택

■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5만 8,439원) 이하
-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 **방법**
사업주체(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지방도시공사)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1600-3456)
- LH 마이홈(☎1600-1004)

● 행복주택

■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의 적용이 다름.

■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 LH 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4인 기준 622만 6,342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 **내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 **방법** 사업 주체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 LH 마이홈(☎1600-1004)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소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문의** LH 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 7,128원) 이하

■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비 등을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신규 사용대차 가구,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 **문의**

- LH 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LH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 긴급주거지원

■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 **문의** LH 마이홈(☎1600-1004)

● 이전비(이사실비) 지원제도

■ **대상**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피해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 해당하고
-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내용**
- 원칙적으로 이사 후에 그 소요된 비용을 청구
- 사전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첨부해 청구하되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

■ **방법(지원 절차)**

이전비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검찰청 제출 → 담당 직원이 검사에게 신청서 즉시 전달 → 검사 결정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이전비 지급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분류: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 방법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제도: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분류: 아동·노인 보호 및 한부모 가정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 **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 **내용**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112"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상담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목록은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참조

● 노인보호전문기관

■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내용**

- 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한 전문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제공
- 학대 행위자 대상 교육 실시

■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목록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www.noinboho.or.kr) 참조

● 지역아동센터

■ **대상**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내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만 9,174원) 이하)

■ **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 **방법**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로 돌봄서비스 신청 → (시군구) 접수/돌봄필요여부 등 자격확인/서비스 제공 결정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사후관리 또는 확인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미혼모·부 초기지원

■ **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 **내용**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방법** 거주지 거점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 거점기관 목록: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맞춤형 서비스 → 한부모가족 → 미혼한부모지원 → 양육 및 자립)

■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2인 기준 155만 5,830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179만 5,188원) 이하

■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부록 2. 여성폭력 법률

여성폭력 법률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3] 여성폭력 법률

구분	법률
여성폭력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 「형법」(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에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희롱	- 「국가인권위원회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과 달리 개별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트폭력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데이트 성범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데이트폭력: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제25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형법」상 '협박의 죄'(제30장) - 스토킹 유형의 데이트폭력: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제3조 4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스토킹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41(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처벌(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 지속적 괴롭힘(「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41):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각 법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의 개념

■ ‘여성폭력’의 정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12.24. 제정, 2019.12.15. 시행)에서는 여성폭력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 '2차 피해'의 개념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1.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2.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
3. 사용자(사용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여성폭력 유형별 정의

1.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의 유형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

2. 성폭력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

■ 강간과 추행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입니다. 각 법률조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4]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구분	조문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조	강간
	297조의2	유사강간
	298조	강제추행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300조	미수범
	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05조의2	상습범
	305조의3	예비, 음모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조	명예훼손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311조	모욕

구분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조	특수강도강간 등
	4조	특수강간 등
	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8조	강간 등 상해·치상
	9조	강간 등 살인·치사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15조	미수범
	15조의2	예비, 음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7조의2	예비, 음모
	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9조	강간 등 상해·치상
	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5조	알선영업행위 등
	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구분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44조의8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전기통신 사업법」	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22조의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3.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

■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

■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4

4.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5.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과 같이 개별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행위와 관련된 조항(예. 「형법」, 「경범죄 처벌법」 등)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의전화가 2018년 발간한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에서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데이트 관계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채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를 아우르는 생활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주거지·근무지·학교 등의 활동 장소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특정 물건이나 사진,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그 외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관련 법률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률은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담기 보다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개별적으로 적용**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데이트 성범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데이트폭력: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제25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형법」상 '협박의 죄'(제30장) - 스토킹 유형의 데이트폭력: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제3조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스토킹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41(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처벌(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색인: 기관유형별

구분	내용	쪽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긴급전화1366/긴급피난처	16-21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 전화번호	132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의 주요 업무	24
	치료·회복 프로그램	25-26
	의료지원	27
	법률지원	28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전화번호	133-140
	가정폭력 법률	184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주요 업무	30
	치료·회복 프로그램	30-31
	의료지원	32
	법률지원	34-35
	전국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전화번호	141-146
	성폭력 법률	185-188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주요 업무	36
	치료·회복 프로그램	37
	의료지원	38
	법률지원	39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40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41
	전국 성매매 피해 상담소 전화번호	147-148
	성매매 법률	189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유형 및 특성	45
	상담지원	46
	의료지원	46
	수사·법률지원	47
	심리치료 지원	48
	동행서비스 지원	49
	전국 해바라기센터 전화번호	150-153

구분	내용	쪽
보호시설	보호시설 주요 지원내용	51
	보호시설 현황	52-53
	보호시설을 통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절차	5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유형 및 입소기간	5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주요 지원내용	5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유형 및 입소기간	58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주요 지원내용	59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유형 및 입소기간	61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주요 지원내용	61-62
	자립·자활지원	66-71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73
	일자리제공사업(공동작업장)	74
	일자리제공사업(인턴십 프로그램)	75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초기상담	78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78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79
	폭력피해 의료·법률지원	80
	폭력피해 자활지원센터	81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82
	전국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전화번호	14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유형의 분류	92
	초기상담	93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9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번호	9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

발행인	박봉정숙
기획/구성	윤선영, 변주연, 김민경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소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연락처	02-735-1050
홈페이지	http://www.stop.or.kr
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 11-B554214-000002-10 여성인권-단행본-2020-6
제작/인쇄	근아인쇄 주식회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

제작 (감수 및 피해자 지원사례 작성)에 도움 주신 분들(가나다순)

구수영	전국여성지원시설협의회 대표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성미경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소장
김한기령	자활지원센터 생생이랑 대표
김향숙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연대 공동대표
김희영	광주 언니네 상담소 소장
노현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2부장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통합형) 부소장
백옥선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서정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이순심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대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으며 허락없이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Tel. 02-735-1050 Fax. 02-6363-8493 www.stop.or.kr